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76
----------	------

2017. 11. 2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7. 11. 14 김인제 의원외 12인 공동발의 (2017. 11. 15 회부)

2. 제안이유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도시계획 관련 중요안건을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의 재위촉시 연임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심의위원의 장기위촉을 제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시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연임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공백기를 거치지 않고 재위촉 될 경우 이를 연임으로 간주토록 함 (안 제57조제5항 신설).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규정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조정함 (안 제63조제1항).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적용되는 준용규정을 삭제함(안 제63조의2제 4항 삭제).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보완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위원회 관련 규정의 준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김인제 의원외 12인이 발의하여 2017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먼저, 위원회의 경우, 지난 2016년 3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한 바 있음. 이는 특정분야 심의위원의 견해가 市 정책 결정과정에 장기·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럼에도 연임기간 종료 후 짧은 공백기를 거쳐 또 다시 같은 위원회에 위촉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위원의 연임 제한 취지를 희석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연임 후 1년내 재위촉을 제한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권한을 일부 제약한다는 점에서 조례입법의 한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미 이 조례에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도시계획 관련 중요 안건을 심의·자문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새롭게 심의위원에 위촉되도록 함으로써 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다양한 시각의 논의 구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 인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연임 이후 1

년내 재위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두 번째, 정책자문단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정책자문단 운영개선을 통해 주요 이슈 및 주제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자문하는 형태로 개선하였음.

정책자문단의 운영(별첨 1 참조)에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별첨 2 참조)을 삭제하려는 것은 정책자문단의 탄력적 운영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부문별 심도있는 논의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제척 및 회피규정, 수당 등의 규정은 현행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별첨 1]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 목적

-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운영과 전환기(고도성장→저성장) 다양한 도시계획 이슈에 대한 연속성 있는 상시 정책 자문

□ 구성·운영 개요

- 도시계획·건축·교통분야는 물론, 미래학 등 인문분야 전문가 포함 구성
 - 전체회의 정례화(월 1회) 및 분과회의 상시운영
-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특정 과제에 대한 집중 논의 등을 위해 이슈 중심의 “분과자문단” 구성



□ 정책자문 주요 안건

- 원칙 및 기준차원 정책방향 자문
 - 자문안건 예시 : 용산공원 관리방안('13 ~ 현재), 서울경관기본계획('1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16), 도시기본계획모니터링('17)
- 공간계획 자문 (행정계획 성격)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 성격
 - 자문안건 예시 : 생활권계획('13~'15), 준공업지역 활성화 방안('15), 용산공원 주변 관리계획('15), 서울역 7017 프로젝트('15), 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16), 용도지역체계개편('17), 역세권활성화방안('17) 등

〔별첨 2〕 정책자문단의 위원회 규정 준용 조항(개정조례안 관련)

- 제57조(구성 및 운영)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②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4명 이상 5명 이하
 2. 시 공무원 4명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 도시설계 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
-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⑧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 ⑨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⑩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

제62조(수당 등)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